

에 전면도로의 너비는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로 하고, 동조동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대지둘레길이의 8분의 1이상 접한 도로 중에서 가장 넓은 도로(이하, 이조에서 “가장 넓은 도로”라 한다)의 너비를 적용한다. 다만, 가장 넓은 도로보다 너비가 더 넓은 도로에 접한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도로의 너비를 적용할 수 있다.
2. 대지둘레길이의 8분의 1이상 접한 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많이 접한 도로(이하, 이조에서 “가장 많이 접한 도로”라 한다)의 너비를 적용한다. 다만, 가장 많이 접한 도로보다 너비가 더 넓은 도로에 접한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도로의 너비를 적용할 수 있다.

제29조제1항 단서중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을 “도로(자동차 전용도로를 포함한다)에 접한 대지(도로와 대지의 사이에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대지를 포함한다) 상호간”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 제1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동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동일한 대지 안에서 2동이상의 건축물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 채광창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 이상.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이의 수평거리가 6미터(마주보는 건축물이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4미터)이상.

제6장 제목중 “재해위험구역”을 “재해관리구역”으로 한다.

제30조 내지 제33조중 “재해위험구역”을 “재해관리구역”으로 한다.

제33조 제1호 및 제2호중 “100분의 120”을 “100분의 140”으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신고 및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신청(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기 위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를 득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을 적용함이 건축허가·신고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다.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 |
|------|-----|
| 의안번호 | 159 |
|------|-----|

2003. 3.
도시관리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 제출일자 : 2003. 2. 28(의안번호 159)
- 위원회 회부일자 : 2003. 3. 4
- 상정일자
 - 제14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관리위원회(2003.3.20) 상정, 제안설명, 검토 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주택국장 진철훈)

가. 제안이유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2003. 1.10) 및 시행규칙(2003. 2.15) 개정으로 도시개발공사 이사회 당연직 비상임이사의 직명이 일부 변경되어 이를 정비하고, 2002. 3. 25 개정된 지방공기업법에 일치하도록 결산기한을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제9조제1항의 당연직 비상임 이사 중 서울시 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도시계획국장·주택국장 및 시정기획관」에서 서울시의 개정된 직제에 맞게 「시장이 지정하는 시의 공무원 3명」으로 개정(안 제9조 제2항)
-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2항 및 제66조 제1항의 개정에 맞춰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설립 및 운영에관한조례 제22조 제1항의 결산기한을 사업년도 종료 후 3월 이내에서 2월 이내로 개정(안 제22조 제1항)

3. 전문위원 겸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재대)

가. 제안배경 및 경과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및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도시개발공사 당연직 비상임이사의 직명이 변경되어 이를 정비하고, 결산기한을 개정된 지방공기업법에 맞춰 개정하는 것임

나. 개정안의 주요특징

- 본 조례개정안은 서울시 조직개편 및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사안으로서
- 도시개발공사 당연직 비상임 이사 중 서울시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도시계획국장·주택국장 및 시정기획관」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시의 공무원 3명」으로 개정하여, 앞으로 서울시의 직제와 직명이 바뀔 때마다 관련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탄력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도시개발공사 매 사업년도의 결산기한을 지방공기업법의 개정내용과 일치토록 당해 사업년도 종료 후 3월 이내에서 2월 이내로 변경하여 결산기한을 정비하였음

 세부사항 겸토결과

- 서울시의 개편된 직제에 맞춰 당연직 비상임이사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고, 사업년도 종료후의 결산기한을 관계법에 의거 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되나,
- 당연직 비상임이사에 관한 규정을 종전 「도시계획국장·주택국장 및 시정기획관」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시의 공무원 3명」이라고 개정함으로써 향후 직제가 바뀌더라고 다시 조례를 개정하지 않도록 하여 운영상의 탄력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시장이 지정토록 위임하는 것은 행정의 재량권 남발우려, 도시개발공사 업무의 특수성, 조례규정상의 명확성 확보 등의 관점에서 보면 행정 편의적인 발상이라고 사료되므로,
 - 본 조례 중 당연직 비상임이사의 규정을 금번 개정된 「서울특별시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동조례시행규칙」의 직제에 맞춰 「도시계획국장·주택국장 및 시정기획관」을 「도시계획국장·주택국장·공기업 관리 및 투자심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판별 요지 : 없음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7. 수정안의 요지 :

안 제9조 제2항의 당연직 비상임 이사에 관한 규정중 「시장이 지정하는 시의 공무원 3인」을 「도시계획국장·주택국장·공기업 관리 및 투자심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수정

8.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